여비 규정

제정 2021. 06. 09.

개정 2021. 12. 21.

개정 2023, 11, 23,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의 임·직원이 업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본회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(철도·선박·항공기·자동차), 일비, 숙박비,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- 제3조(여비의 구분)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.
- 제4조(여비의 계산)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(개정 2021, 12, 21,)
 - ② 삭제 (2021. 12. 21.)
- 제5조(여비일수 계산)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 - ② 삭제 (2021. 12. 21.)
- 제6조(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) ① 출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그 외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, 운전원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1. 12. 21.)

- ② 제1항에서 "근무지 내 국내 출장"이란 남양주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 다만, 출장지역이 다른 시·군에 위치하면서 출장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, 교통여건(전철, 버스, 택시 등)을고려하여,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관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. (개정 2021. 12. 21.)
- 제7조(여비의 정액) ① 여비는 "별표 1"의 국내여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
 - ② 삭제 (2021. 12. 21.)
 -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.
 -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8조(국외여비)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"별표 2"의 국외여비기준표와 "별표3"의 국외여비 지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제9조(임·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)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·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"별표 4" 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수당과의 관계) ① 휴일 또는 토요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여비와 시 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여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, 소년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,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 및 임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전 근무명령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 참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1조(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) 근무지 또는 출장 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(滯在)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. (신설 2021, 12, 21.)
- 제12조(여비의 구분 계산)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·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다만, 해당 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 (신설 2021, 12, 21.)
-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 (신설 2021. 12. 21.)
- 제13조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(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 2021. 12. 21.)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(신설 2021. 12. 21.)
- 제14조(철도운임의 지급)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(實費)로 지급한다. (신설 2021. 12. 21.)
- **제15조(선박운임의 지급)**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 (신설 2021. 12. 21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신설 2023. 11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「별표1] (개정 2023. 11. 23.)

국내여비 기준표

(제7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관련)

구 분	공무원 여비규정	운 임				일 비	숙박료	식 비
		철도	선박	항공	자동차	(1일당)	(1박당)	(1일당)
임원 (전무, 국장 포함)	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5,000원	실비	25,000원
과장 이하	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5,000원	실비 (상한액: 서울 100,000원 광역시 80,000원 기타지역 70,000원)	25,000원

[비고]

-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2등석 정액으로 한다.
- 2.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.
- 3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.

[별표2] (개정 2023. 11. 23.)

국외여비 기준표(제8조 관련)

구 분	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	비	고
임원 (전무, 국장 포함)	제3호		
과장 이하	제5호		

[별표3] (개정 2023. 11. 23.)

국외여비 지급표(제8조 관련)

(단위:미 달러화(\$))

구분	등급	<u>일비</u>	<u>숙박비</u>	<u>식비</u>
	가	40	실비(상한액 : 282)	133
제3호	나	40	실비(상한액 : 207)	99
	다	40	실비(상한액 : 162)	72
	라	40	실비(상한액 : 108)	61
	가	30	실비(상한액 : 176)	81
제5호	나	30	실비(상한액 : 137)	59
	다	30	실비(상한액: 106)	44
	라	30	실비(상한액 : 81)	37

[비고]

-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가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타이완, 베이징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파푸아뉴기니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 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
3) 유럽주: 그리스, 네덜란드, 놋르웨외, 덴마크, 독일, 러스탈베륨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박 이탈레아, 포르투깔, 프랑스, 핀란흐, 헝가리

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수단, 남수단 아랍에미리 트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기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파키스탄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앤티가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,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- 3) 유럽주: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레 슬로,베니아, 마케도니아, 체코, 폴란드

劉培帝·아프리카주: 가나, 나이지리아, 니제르리아 , ;

[별표4]

임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(제9조 관련)

해당자	지급기준	비고
1. 임ㆍ직원의 배우자	배우자인 임ㆍ직원의 여비지급 등급	
2.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	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, 사립학교 교원은 국·공립학교 교원의 여비지급 등급을 준용한다.	
3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임·직원	나 처잣 무잣 차잣 과잣 늣 단위 무서의 퐈	
4. 민간기업체의 임ㆍ직원	공공기관의 임·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등급	
5. 기타 임ㆍ직원이 아닌 사람	업무의 성격, 동반 임·직원의 직위 및 당 해 임·직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 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등급	